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16,966,307	21,508,989
일반회계	621,098,819	18,632,965
특별회계	95,867,488	2,876,025
공기업특별회계	52,217,824	1,566,53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2,217,824	1,566,535
기타특별회계	43,649,664	1,309,490
주택사업특별회계	12,400	372
의료보호특별회계	495,083	14,85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1,389,800	41,6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3,691	17,811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49,811	37,494
수질개선특별회계	39,908,879	1,197,26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조서] "붙임"과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조서] "붙임"과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52,56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2022년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